

2022년 제2회 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외국어상담원) 채용 공고

2022년 제2회 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외국어상담원)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9월 5일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기관	채용분야	응시분야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김포공항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외국어상담원	태국어	1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내 K-ETA 센터

2. 담당 업무

- K-ETA 관련 문의 대응(이메일, 전화상담 등)
 - ※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K-ETA센터 및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언어 지원(통역·번역·자료검색 등)
- K-ETA 분석 업무 보조
- 출입국관리 행정지원 업무 등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3. 신분사항 및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 ※ 기간제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을 적용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 법무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의거 근무성적평정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다. 보수 : 월 고정급합계 2,695,660원 (세액공제 전)

- ※ 후생복지 : 명절휴가비 연 1,000,000원, 맞춤형 복지비 연 500,000원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4대 보험 가입

- ※ 계약서 작성 시 임금조건 안내 예정

라. 근무시간 : 평일 09:00 ~ 18:00까지(주 5일 근무, 점심시간 12:00 ~ 13:00)

- ※ 주 5일, 1일 8시간, 법정 공휴일 휴무

- 사무소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준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 학력 :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

※ 기관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국제공항 2층)

○ 한국어 및 지원 언어에 모두 능통한 자

태국어	- 아래 표 최하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어학성적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해당 등급별 차등 점수 부여 -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경우 정기시험(수시, 특별 불인정) 성적표만 인정하되 국내에서 취득한 것이어야 함 -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표가 두 종류 이상인 경우 유리한 점수의 성적표 하나만 제출 - 성적표는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것이어야 함			
	평가등급	FLEX 1B, 1A	FLEX 1C	FLEX 2A 이하
	서류전형 점수	50	40	30

나. 우대 사항(해당자에 한하며, 서류 전형에만 적용)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통·번역 업무를 하며 1년 이상 상근직으로 근무한 자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업무로 통·번역이 명시되지 않은 증명서는 불인정함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장애인 우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함

○ 저소득층 우대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5. 시험전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 ※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한 경우,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어학능력 검정시험 성적표, 관련 분야 근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자 처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가항목 과락 : 심사위원 반수 이상이 평가항목 2개 이상을 “하”로 평가하였거나, 심사위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동일한 평가항목을 “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결정

(평정요소)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의 경우 면접시험 당일 외국어 능력(회화, 번역 등) 평가를 실시

다. 채용시험 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응시원서 접수	2022. 9. 13.(화) ~ 9. 23.(금)	· 김포공항 국제선 2층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민원실 · 등기우편 접수 혹은 방문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2. 9. 30.(월) 16:00 이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2. 10. 4.(화) (예정)	· 김포공항국제선 2층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회의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2. 10. 7.(금) 16:00 이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합격자 등록	2022. 10. 11.(화)	· 김포공항국제선 2층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민원실	
채용 계약 및 근로개시	2022. 11. 1.(화) (예정)	·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면접시험 예비합격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회 등의 일정으로 변경 가능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예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2. 9. 13.(화) ~ 2022. 9. 23.(금) 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방법 : 등기우편 혹은 방문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2022. 9. 23.) 소인분에 한함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운영지원팀 채용담당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다.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본 채용 공고일(2022. 9. 5.) 이후 발급된 원본에 한해 인정함.
다만,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7. 기타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함(별지서식10호)

※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2. 11. 1. ~ 2022. 12. 1.

○ 응시원서 상의 허위기재,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응시자격을 위반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또한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이 있을 경우 별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예비 합격 후보자를 채용 가능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개별 통지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운영지원팀(☎ 02-2664-6202)으로 문의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김포공항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외국어상담원)

■ 제출 목록

목 록	제출여부	
① 제출서류 총괄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⑦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필수)	☐ 제출	☐ 미제출
⑧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⑨ 어학능력 검정시험 성적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⑩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에 한함,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	☐ 미제출
⑪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⑫ 저소득층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⑬ 장애인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본인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2회 기간제근로자(외국어상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 년 월 일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응 시 원 서							
[2022년 제2회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외국어상담원) 채용시험]							
※ 응시번호					※ 복수국적 * 해당시 √ 표시		
※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외국어상담원)					
인 적 사 항	성	한 글		생년월일		성별	
	명	한 자		(만 세)			
	주 소		(우:)				
	e-Mail						
	자택전화					휴 대 폰	

간인

응 시 표							
[2022년 제2회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외국어상담원) 채용시험]							
※ 응시번호					※ 복수국적 * 해당시 √ 표시		
※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외국어상담원)					
인 적 사 항	성	한 글		생년월일		성별	
	명	한 자		(만 세)			
	주 소		(우:)				
	e-Mail						
	자택전화					휴 대 폰	
2022 년 월 일							
김 포 공 항 출 입 국 · 외 국 인 사 무 소 장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컴퓨터로 작성하여 제출
3.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4.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 ① 주소 :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작성하며,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② 성명·전자우편·휴대폰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명
기간제근로자(외국어상담원)	※	(서명)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작성요령) · 응시분야 √표시하고, ※응시번호 기재하지 말 것

-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성과, 입사 후 직무수행계획(목표 등)이 드러나도록 작성
- A4용지 1~2매 분량으로 작성, 한글에서 폰트 휴먼명조체 13 포인트, 보통, 줄 간격 170 %

1. 지원동기, 관련 경력이 있다면 적어주시고 해당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작성해주십시오.
2. 타인과의 갈등상황을 극복한 경험과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등에 대하여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해주십시오.
3.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근무 자세와 공직관에 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기간제근로자(외국어상담원) 신규채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학위 등	기간제근로자(외국어상담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기간제근로자(외국어상담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항목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기간제근로자(외국어상담원) 채용 관리	자격, 경력, 취업지원대상자 등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2022 년 월 일

생년월일 :
동의자 성명 : (서명)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외국어상담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채용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
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
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 년 월 일

생년월일 :

동의자 성명 : (서명)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채용 결격사유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정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 년 월 일

생년월일 :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있음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해당 ☐ 비해당 ☐

1, 2, 4-1, 4-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해당 ☐ 비해당 ☐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본인은 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에 채용되면서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채용결격 사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등 법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2년 업무 일

성명 : (서명)

김포공항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장 귀하

경 력 증 명 서(예시)

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근 무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총 근무일수	년 월 일	
퇴사일자	년 월 일			
근 무 세 부 내 역				
해당부서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상근여부	
년.월.일 ~ 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 당 자	(인)
			문의전화	() -

위와 같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월 일

직 인

○○기관 기관장 ○○○

【별지서식 제10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 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코로나-19 관련 유의 사항

1. 최근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채용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등 격리대상자, 능동감시자, 의심증상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증상자는 면접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2. 면접 당일 의무적 발열검사 및 손소독제 사용

- 면접응시자는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기장소 및 면접대기실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하며, 손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한 후 입실하여야 합니다.

※ 손소독제 대기실 등 비치 예정

3. 전원 마스크 착용

- 면접응시자는 면접 진행 전 과정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면접대기실 내 대기 시 자리 이격 착석

- 면접응시자는 당일 면접대기실(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회의실)내 대기 시 타 면접응시자들과 이격하여 착석하여 주시고 상호간 대화 및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접시험 종료 후 기타 주의사항

- 면접응시자는 당일 면접종료 후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청(1339) 및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02-2664-6202)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6. 면접응시자 외 외부인들의 면접장 출입 엄격 통제

7.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면접진행요원의 안내 사항 엄수

응시자가 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즉시 퇴실조치 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